

**2020-8차 규정심의위원회
규정 신규대조표**

1.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서 및 제68차 대학평의위원회 추가 의견 및 심의 결과	2
2. 금강대학교 사회봉사규정 개정(안) 심의서	7
3.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(안) 심의서 및 2020-8차 규정심의위원회 추가 의견	15

1.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서

1. 개정의 사유

편입학 기준,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, 학위과정 수료 구체적 명시 등 학칙의 현실화를 위함

2. 개정의 내용(주요골자)

가. 편입학 기준 구체적 명시

나. 박사과정 5학기생의 최대 수강신청 학점 확대

다. 학위과정 수료 조건 구체적 명시

제68차 대학평의원회 추가 의견 및 심의 결과

1. 심의 결과 : 부결

2. 부결 사유 : 대학평의원회 심의 내용 : 제2장 제5조 2항에 따라 박사과정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경우 최종학기는 4학기이므로, 제5장 제23조 2항의 문구 중 '5학기'를 '4학기'로 수정하여 재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여 부결 의사를 표함. 다만, 재심의 시 2021학년도 1학기 적용 희망자를 위해 경과조치로 해당 기간부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임

신·구 조문 대조표

(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)

제 정	:	2007. 11. 1
개 정	:	2009. 4. 1
개 정	:	2013. 1. 1
개 정	:	2014. 2. 1
개 정	:	2017. 4. 1
개 정	:	2018. 6. 1
개 정	:	2019. 4. 8
개 정	:	2019. 7. 8
개 정	:	2020. 3. 1
개 정	:	2020. 6. 15
개 정	:	2020. 10. 22
개 정	:	2021. 02.

현행	개정(안)	사유																		
- 중 략 -	- 중 략 -																			
<p>제12조(편입학) ① 총장은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타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2.></p> <p>② 편입학 지원자격은 동일(유사)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을 취득한 자이며, 본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.<개정 2020.3.1.></p>	<p>제12조(편입학) ① 총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타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2.> <개정 2021.3. .></p> <p>②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 지원자격은 동일(유사)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며, 본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. 편입학 학기에 따른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3.1.> <개정 2021.2. .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위과정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편입학기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적대학원 이수 학기 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수학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석사학위과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학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학기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학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학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학기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학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사학위과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학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학기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학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학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학기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학점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학위과정	편입학기	전적대학원 이수 학기 수	이수학점	석사학위과정	2학기	1학기 이상	6학점 이상	3학기	2학기 이상	12학점 이상	박사학위과정	2학기	1학기 이상	9학점 이상	3학기	2학기 이상	18학점 이상	<p>편입학 시기 구체적 명시</p> <p>편입학시 지원자격 구체적 명시</p>
학위과정	편입학기	전적대학원 이수 학기 수	이수학점																	
석사학위과정	2학기	1학기 이상	6학점 이상																	
	3학기	2학기 이상	12학점 이상																	
박사학위과정	2학기	1학기 이상	9학점 이상																	
	3학기	2학기 이상	18학점 이상																	

③ 입학시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 (전공)교수회의에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20.3.1.>
 ④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내의 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.<신설 2020.3.1.>
 ⑤ 편입학생은 조기수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 대학원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. <신설 2020.3.1.>

- 중 략 -

제5장 교육과정과 수료

제22조(교육과정 및 교과목) ① 대학원에서 이수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학과내 전공별 교육과정표에 의한다.<개정 2020.3.1.>

② 전공별 교과목은 석사, 박사과정 모두 최소 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3.1.>

제23조(학기당 수강신청 학점) ① 학생은 수료전까지 매학기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.

제24조(선수과목 이수) ① 대학원장은 비 동일계열 입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에 대한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③ 입학시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 (전공)교수회의에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20.3.1.>

④ 삭제<개정 2021.2. .>

⑤ 좌동

- 중 략 -

제5장 교육과정과 수료

제22조(교육과정 및 교과목) 좌동

제23조(학기당 수강신청 학점) ① 좌동

②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. 다만, 박사과정 5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교수회의 승인을 거쳐 수강신청은 최대 12학점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2. .>

제24조(선수과목 이수) 좌동

원우회 개정요청 사항으로 박사학위과정 5학기 재학생 수강신청학점 확대 명시

<p>② 선수과목 이수능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, 대학원 졸업 학점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 <p>제25조(국내·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) 대학원 재학 중 국내·외 정규 대학원에서 본인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1.> <개정 2020.10.22.></p> <p>제26조(학위과정 수료) ①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 중 전 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</p> <p>②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,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③ 학위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학기 종료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중 략 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</p> <p>가. (전공 폐지 및 명칭변경)</p> <p>1) 이 학칙개정 이전의 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(SDB)은 폐지한다.</p> <p>2) 불교복지학전공은 불교복지상담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.</p> <p>나. (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</p>	<p>제25조(국내·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) 좌동</p> <p>제26조(학위과정 수료) ①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제5조(수업연한)의 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 중 전 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 다만,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해당 과목 이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 <개정 2021.3. .></p> <p>② 좌동</p> <p>③ 좌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중 략 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</p> <p>가. (전공 폐지 및 명칭변경)</p> <p>1) 이 학칙개정 이전의 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(SDB)은 폐지한다.</p> <p>2) 불교복지학전공은 불교복지상담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.</p> <p>나. (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</p>	<p>학위과정 수료조건 구체적 명시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)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복지학전공 재적중인 학생은 불교복지상담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
다. 이 개정학칙 제5조(수업연한)1항, 제14조(등록) 3항은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.

라. 이 개정 학칙 제27조(학업성적)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

1)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복지학전공 재적중인 학생은 불교복지상담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
다. 이 개정학칙 제5조(수업연한)1항, 제14조(등록) 3항은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.

라. 이 개정 학칙 제27조(학업성적)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

2.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(안) 심의서

1. 규정 개정 취지

- 유연한 학사제도 확립을 위한 학사내규 개정

2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- 전과, 복수전공, 자율설계융합전공 기준 완화
- 교과목 개설 기한 변경
-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성적등급별 분포 예외 적용 조항 신설
- 편입생과 복수학위생의 졸업하기 위한 골드 취득 기준 추가

3. 신규대조표

※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(안)에 대한 2020-8차 규정심의위원회의 추가의견

1. 주요 골자

- 표현의 모호함을 개선

2. 개정 주요 내용

- 제17조 ④와 ⑤의 내용 중 "이수(취소)신청은"을 "이수신청과 취소신청은"으로 수정

	<p>⑤자율설계융합전공의 이수신청과 취소신청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 <신설 2021.02.00.></p>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전과</p> <p>제19조(전과범위) 전과의 대상은 모든 학과(전공)로 한다. <개정 2020.02.17.></p> <p>제20조(시행시기 및 인원) ①전과는 매 학년도 지정 기간에 시행하며, 전과 인원은 전입 받는 학과 입학정원의 10%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폐지 및 통합되는 학과(전공)의 경우 전과신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학제개편에 따른 전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17., 2020.06.15.></p> <p>② 삭제</p> <p>제21조(자격요건) ①2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다. 다만, 수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3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2.17.></p> <p>②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2020.02.17.></p> <p>1. 전과 이전까지의 학년 수료학점 취득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81 1214 855 1353"> <tr><td>2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2/8</td></tr> <tr><td>3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3/8</td></tr> <tr><td>4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4/8</td></tr> <tr><td>5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5/8</td></tr> </table> <p>2. 전과 이전까지의 총 성적평점평균 3.00 이상</p> <p>3.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과별로 지정한</p>	2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2/8	3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3/8	4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4/8	5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5/8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전과</p> <p>제19조(전과범위) 전과의 대상은 모든 학과(전공)로 한다. <개정 2020.02.17.></p> <p>제20조(시행시기 및 인원) ①전과는 매 학년도 지정 기간에 시행하며, 전과 인원은 전입 받는 학과 입학정원의 10%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폐지 및 통합되는 학과(전공)의 경우 전과신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학제개편에 따른 전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17., 2020.06.15.></p> <p>② 삭제</p> <p>제21조(자격요건) ①2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17.><개정 2021.02.00.></p> <p>②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2020.02.17.></p> <p>1. 전과 이전까지의 학년 수료학점 취득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07 1214 1581 1353"> <tr><td>2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2/8</td></tr> <tr><td>3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3/8</td></tr> <tr><td>4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4/8</td></tr> <tr><td>5학기 이수자</td><td>졸업학점의 5/8</td></tr> </table> <p>2. 전과 이전까지의 총 성적평점평균 3.00 이상</p> <p>3.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과별로 지정한</p>	2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2/8	3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3/8	4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4/8	5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5/8	<p>- 전과 신청의 5학기 제한 삭제 및 수시특별전형 신청 예외 구문 삭제</p>
2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2/8																	
3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3/8																	
4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4/8																	
5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5/8																	
2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2/8																	
3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3/8																	
4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4/8																	
5학기 이수자	졸업학점의 5/8																	

<p>기)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2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, 학생은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,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2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2.17.></p> <p>④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<p>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2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, 학생은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,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2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2.17.><개정 2021.02.00.></p> <p>④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1장 시험 및 성적</p> <p>제62조(시험의 구분) ①시험은 정기시험, 비정기 시험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정기시험: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당 수업일수 1/2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,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.</p> <p>2. 비정기 시험: 과제학습, 세미나 등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 하에 시행한다.</p> <p>②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성적제출일 이전에 별도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중 략 -</p> <p>제65조(성적분포) ① 삭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1장 시험 및 성적</p> <p>제62조(시험의 구분) ①시험은 정기시험, 비정기 시험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정기시험: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당 수업일수 1/2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,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.</p> <p>2. 비정기 시험: 과제학습, 세미나 등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 하에 시행한다.</p> <p>②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성적제출일 이전에 별도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중 략 -</p> <p>제65조(성적분포) ① 삭제</p>	

<p>②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(선수과목을 이수하는 대학원생과 교환학생은 제외)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명 이상인 교과목: A등급(A+, A0, A-)은 40% 이내, A등급(A+, A0, A-)과 B등급(B+, B0, B-)의 합은 80%이내로 한다. 10명 미만인 교과목: 절대평가를 하되 A등급은 40% 이내로 한다. 해당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: A등급의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인원으로 하고 A등급과 B등급의 합인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으로 한다. 영어전용강좌 및 외국어강의, 현장실습 교과목: 절대평가를 한다. 	<p>②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(선수과목을 이수하는 대학원생과 교환학생은 제외)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명 이상인 교과목: A등급(A+, A0, A-)은 40% 이내, A등급(A+, A0, A-)과 B등급(B+, B0, B-)의 합은 80%이내로 한다. 10명 미만인 교과목: 절대평가를 하되 A등급은 40% 이내로 한다. 해당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: A등급의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인원으로 하고 A등급과 B등급의 합인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으로 한다. 영어전용강좌 및 외국어강의, 현장실습 교과목: 절대평가를 한다. <p><u>③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등급별 분포를 다르게 할 수 있다.<신설 2021.02.00.></u></p>	<p>-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예외 적용 명시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2장 졸업</p> <p>제70조(졸업의 기준) ①졸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02.17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학기: 8학기 이상(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) 취득학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취득학점: 130학점 전공과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2장 졸업</p> <p>제70조(졸업의 기준) ①졸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02.17.>< 2021.02.0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학기: 8학기 이상(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) 취득학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취득학점: 130학점 전공과정 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일전공 60학점 이상 - 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 - 자율설계융합전공: 자율설계융합전공 운영 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20.06.15.> <p>3. 총 성적 평점평균: 2.00 이상(조기졸업자는 4.00 이상). 다만,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이 20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성적이 낮은 교과목 순으로 제외하고 성적평점평균 산출</p> <p>4. 교육과정 및 기타</p> <p>가. 2020학년도 신입생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 33학점 - 영어인증제 합격 - 160골드 취득 <p>나. 2018학년도, 2019학년도 신입생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되,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에서 2과목 이상은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 -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합격 -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 합격 - 졸업인증제 영역별 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일전공 60학점 이상 - 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 - 자율설계융합전공: 자율설계융합전공 운영 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20.06.15.> <p>3. 총 성적 평점평균: 2.00 이상(조기졸업자는 4.00 이상). 다만,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이 20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성적이 낮은 교과목 순으로 제외하고 성적평점평균 산출</p> <p>4. 교육과정 및 기타</p> <p><u>가.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<개정 2021.02.00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 33학점 - 영어인증제 합격 - 160골드 취득(단, 편입생과 복수학위생은 80골드 취득)<개정 2021.02.00> <p><u>나. 2018학년도,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<개정 2021.02.00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되,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에서 2과목 이상은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 -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합격 -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 합격 - 졸업인증제 영역별 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학생으로 용어 통일 및 2021학년도 입학생 적용 기준명문화 - 편입생과 복수학위생의 골드 취득 기준 추가
--	--	---

<p>다.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-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름 ②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의한다. 단,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입학 학년도 기준에 따른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<p>다.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-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름 ②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의한다. 단,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입학 학년도 기준에 따른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제17조는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(편입, 재입학)은 예외로 둔다. 3. (경과조치) 제75조에도 불구하고, 총학점을 이수한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4. (경과조치) 제14조 및 제21조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병역 의무 등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전공 결정 및 전과신청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제17조는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(편입, 재입학)은 예외로 둔다. 3. (경과조치) 제75조에도 불구하고, 총학점을 이수한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4. (경과조치) 제14조 및 제21조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병역 의무 등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전공 결정 및 전과신청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2. (경과조치) ①제17조(복수전공·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 및 취소) 제1항, 제5항 및 제65조(성적분포) 제3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u> <u>②제42조(교과목 개설) 제1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

3. 금강대학교 사회봉사규정 개정(안) 심의서

1. 개정의 사유

-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과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금강대학교 사회봉사 규정을 개정하게 됨.

2. 제정 주요내용(주요골자)

- 업무의 총괄은 대외협력팀에서 한다.
- 대외협력팀에서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회봉사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.
- 간사는 대외협력팀 담당 교직원이 된다.

3. 개정 지침(안)

- 금강대학교 사회봉사규정 신규대조표 참조

4. 시행일자 : 금강대학교 사회봉사규정 개정(안) 통과일 이후부터 시행

신·구 조문 대조표 (금강대학교 사회봉사규정)

현 행	개 정
<p>제3조(조직) 사회봉사 관련 제반사업의 행정지원 담당부서는 사회봉사자 또는 조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, 전체적인 업무의 총괄은 경영지원팀에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또는 교원이 주축이 되는 조직의 사회봉사 : 교무지원팀 2. 직원 또는 직원이 주축이 되는 조직의 사회봉사 : 경영지원팀 3. 학생 또는 학생이 주축이 되는 조직의 사회봉사 : 학생지원팀 <p>제5조(계획) ①경영지원팀에서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회봉사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담당부서에서는 지정양식<별표1>을 활용하여 협의된 사회봉사관련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</p> <p>제6조(결과보고/점검/활용) ①사회봉사를 시행한 담당부서에서는 지정양식<별표2>을 활용하여 사회봉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경영지원팀에 제출한다.</p> <p>②경영지원팀은 제출된 사회봉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회봉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한다.</p> <p>제8조(구성) ①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, 교학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직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된다.</p>	<p>제3조(조직) 사회봉사 관련 제반사업의 행정지원 담당부서는 사회봉사자 또는 조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, 전체적인 업무의 총괄은 대의협력팀에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또는 교원이 주축이 되는 조직의 사회봉사 : 교무지원팀 2. 직원 또는 직원이 주축이 되는 조직의 사회봉사 : 경영지원팀 3. 학생 또는 학생이 주축이 되는 조직의 사회봉사 : 학생지원팀 <p>제5조(계획) ①대의협력팀에서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회봉사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담당부서에서는 지정양식<별표1>을 활용하여 협의된 사회봉사관련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</p> <p>제6조(결과보고/점검/활용) ①사회봉사를 시행한 담당부서에서는 지정양식<별표2>을 활용하여 사회봉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대의협력팀에 제출한다.</p> <p>②대의협력팀은 제출된 사회봉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회봉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한다.</p> <p>제8조(구성) ①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, 교학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직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대의협력팀 소속 교직원이 된다.</p>